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번호 656

제안년월일 : 2019년 6월 17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하고, 제3장 각 조의 내용에 맞춰 제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 재정지원심의회 위원에 CNG자동차 보급과 연관이 없는 대기정책과장을 제외 함(안 제10조제3항)
- 제3장 각 조의 내용에 맞춰 제목을 수정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제3항 중 "차량공해저감과장·대기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 장"을 "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안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	제3조(적용)	제3조(적용) (개정안과 같음)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보급,		
<u> 저공해조치</u> 또는 조기폐차	<u>저공해 조치</u>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		
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		
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		
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 .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	제4조(재정지원대상)	제4조(재정지원대상) (개정안과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에 대		같음)
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u>범위</u>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상은 「대기		
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의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제3항에 따라	
자로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개정
의 융자한도액은 천연가스		안과 같음)
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u>시장</u>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	
제6조(재정지원조건등)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제6조 <u>(재정지원조건 등)</u> ①

(생 략) ② 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u> 의하여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 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라</u>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은행(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은행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u>유기</u>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 고) 시장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당해</u> 년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 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 고) <u>해당</u> <u>연도</u>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 고)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1. ~ 4.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	3	3
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이이 즈	위원 중
<u>위원중</u> 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	위원 중 차량공해저감과장·대기정책	<u> </u>
환경정책과장 및 다음 각	과장·환경정책과장·버스정책	과장·버스정책과장
호의 자로 한다.	<u>과장</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④ ~ ⑤ (개정안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	등) ①	등) ① (개정안과 같음)
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		
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의 규정	<u>제 8</u> 조에 따라	
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제13조(융자금대출) ① (개정
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안과 같음)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		
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에 <u>의하여</u> 자금을 대출 한	따라	
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3장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제3장 <u>운행경유차</u> 저공해 촉진	제3장 <u>운행경유자동차 등</u> ——
및 지원	및 지원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 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 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 이 2005년 12월 31일 이 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 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 2호 마목 비고 제6호에 따 라 2006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자 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 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 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 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 보급 되지 않은 의무 대상자동차
-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 전법, 제2조제16호 및 제 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 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자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같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제29조제1호에 따른 자 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 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 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 다)로 한다. -----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자동차의 종류) (개정안과

1	- <u>저공해</u>
<u>엔진</u> 개조	
	- <u>의무</u>
대상 자동차	
2	

1. (개정안과 같음)

- 의무대상

2. (개정안과 같음)

<u>동차</u> .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u>저감장치</u> 가 인증、 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자동차</u> <u>배출가스저감장치</u>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u>의무대상자동차</u> 소유	<u>의무대상 자동차</u>	(개정안과 같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		
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i	
노후 등으로 <u>저공해조치</u> 가	<u>저공해 조치</u>	
현실적으로 곤란한 <u>의무대상</u>	<u>의무대상</u>	
<u>자동차</u> 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u> 자동차</u>	
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 배출가스저감장치	1. (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개정안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1)	제17조(저공해 <i>조</i> 치 기간) ①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는		(개정안과 같음)
	<u>의무대상 자동차</u>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의구내강 사동자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의구내강 사능자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当子中で 本子本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 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 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 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 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 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		② (개정안과 같음)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 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해 유예 받은 의무대상 자동차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l	
고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 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공 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자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 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당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 감호 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참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 작공해 조치 — 작공해 조치 등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등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감음) 를 가능하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감음) ② (한행과 감음) ② (한행과 같음)	③ 제2항에 <u>의해</u> 유예 받은	③	③ (개정안과 같음)
교부터 2개월 이내에 저공 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 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 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 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찬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 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은 작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작 자 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선 략)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	<u>의무대상자동차</u> 소유자는	의무대상 자동차	
해조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 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대상 자동차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 감상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 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첫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이행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 대하여 예산의 법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차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제정적 자원) ① 시장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대상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등 조기폐차한 무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 집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 집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 집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 집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 집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 집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및 대기오염물질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 집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및 대기오염물질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 1등 집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 범위 및 대기오염물질 제20조(기타 대기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자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 대상자동차의 정비상대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 감상치를 부착하여도 지갑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연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현행과 작음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법위	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저공</u>	<u>저공</u>	
조치 권고) ① 시장은 의무 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 감상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찬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전 전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벌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의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보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보위 보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환경기선에 관한 특별법 기환경 기관 기관 연물질 기관 기관 연물질 기관 기관 연물질 제원 기관 기관 연물질 제원 기관 기관 연물질 제원 기관 기관 연물질 제원 기관 연물질 제원 기관	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해 조치	
대상자동차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 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 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참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전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전 연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전 전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벌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경인 파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법위 보위 보위 보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법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법위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무법위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 감정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 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찬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조치 권고) ① 시장은 <u>의무</u>	조치 권고) ① <u>의무</u>	조치 권고) ① (개정안과 같
	<u>대상자동차</u> 의 정비상태불량	<u>대상 자동차</u>	<u>♥</u>)
응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찬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전용하고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돼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무 기계 등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등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가 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페차한 무무무 기계 가 기오염물질 제 기 기오염물질 제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		
지는 경우에는 의무대상자동	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		
**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 ② (개정안과 같음) ** ③ (개정안과 같음) **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벌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 범위— 범위— 범위— 범위— 변위— 변위— 변위— 변위— 변위— 변위— 변위— 변위— 변위— 변	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		
등을 선행하고, 전공해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되는 경우에는 <u>의무대상자동</u>	<u>의무대상 자동</u>	
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은 전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 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재정적 지원) ①	<u>차</u>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u> 최</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은 전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 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벌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 ———————————————————————————————————	등을 선행하고, <u>저공해조치</u>	<u> </u>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전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범위	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u> 최</u>	
은 저공해조치 명령을 이행 저공해 조치 정안 같음) 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기자 등자를 가장하는 그리고 가동차를 조기폐차한 범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 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 대하여 예산의 범위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 범위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개
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은 <u>저공해조치</u> 명령을 이행	<u>저공해 조치</u>	정안 같음)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범위	한 자동차 또는 <u>조기폐차</u> 자	<u>「수도권 대</u>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범위	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u>	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범위 법위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u>내</u> 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범위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u>출원에 대한 대책</u>) ① 시장 <u>배출원에 대한 대책</u>) ① <u>배출원에 대한 대책</u>) ① (개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u>배출원에 대한 대책</u>) ① (개

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		정안과 같음)
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4. <u>기타</u> 시장이 인정한 대기	4. 그 밖에	4. (개정안과 같음)
오염 물질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	②	② (개정안과 같음)
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		
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감		
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		
산의 <u>범위 내</u> 에서 필요한 재	범위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5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8조에 따른"으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를 "범위"로,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5조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재정지원조건등)"을 "(재정지원조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을 "차량공해저갂과장·화경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후단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조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장 제목 중 "운행경유차"를 "운행경유자동차 등"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 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급이면서 경유를 연료 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저공해 엔진개조"를 "저공해엔진 개조"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후단 중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의무대상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를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10%"를 "10퍼센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해"를 "따라"로, "의무대상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조치"를 "저공해조치"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의무대상자동차"를 각각 "의무대상 자동차"로,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저공해조치"를 "저공해 조치"로, "조기폐차"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을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 「대기환경보전법」 제58	제3조(적용) <u>제58</u>
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로의	조에 따른
전환·보급, <u>저공해조치</u> 또는 조기폐차	<u>저공해 조치</u>
권고,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하	
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정지원대상) 천연가스자동차를	제4조(재정지원대상)
구입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u>범위</u>	범위
<u>내</u> 에서 그 소요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보조 및 융자(이하 "재정지	
원"이라 한다)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	
상은 「대기환경보전법」 <u>제58조제3</u>	제58조제3
<u>항의 규정에 의하여</u> 다음 각 호의 자로	<u>항에 따라</u>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자금의 융자한	제5조(재정지원한도액)
도액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하여 <u>시장</u> 이 따로 정할 수 있다.	<u>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u>
	<u>한다)</u>
제6조 <u>(재정지원조건등)</u> ① (생 략)	제6조(재정지원조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융자금리의 감면 또는 융자금	

- 의 상환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③ (생 략)
-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은행 (이하 "수탁은행"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대하하고, 대하금리는 수탁은행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 ② (생 략)
-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시장 은 매년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당해년도</u> 재정지원계획을 수립 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1. ~ 4. (생략)
-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생 략)
 - ③ 심의회의 의장은 기후환경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u>위원중</u>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u>대기정책과장·버스정책과장·</u> <u>환경정책과장</u> 및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융자사무의 위탁 등) ①
제2조제2호의 따른
범위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정지원계획의 수립·공고)
해당 연도
<u>에당 단고</u>
1. ~ 4. (현행과 같음)
제10조(재정지원심의회 개최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 중</u>
<u>차량공해저감과장·환경정책</u>
<u>과장·버스정책과장</u>
 .

- 1. ~ 5. (생략)
- ④ ~ ⑤ (생 략)
-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시장은 재정지원신청금액이 재정지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대상자별로 재정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그 조정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다.
 - ② (생략)
- 제13조(융자금대출)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u>의하</u> <u>여</u> 자금을 대출 한다.
 - ② (생략)

제3장 <u>운행경유차</u>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단, 건설기계 제외)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비고 제6호에 따라 2006년 1월 1일이후 출고된 차량 중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1. ~ 5. (언앵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재정지원금액의 조정 등) ①
8조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융자금대출) ①
따라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u>운행경유자동차 등</u>
제15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종류) <u>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u>
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
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중 5등
급이면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
다)로 한다

제작된 자동차로 총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의무대상 자동차"라 한다)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배출가스저감장치(<u>저공해 엔진개</u> 조를 포함한다)가 인증 보급 되지 않은 의무대상자동차
- 2. 출고 당시 「대기환경보전법」제 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 치가 부착된 <u>의무대상자동차</u>.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u>저감장치</u>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시장은 의무대상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의무대상자동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 <u>배출가스 저감장치</u> 부착
 - 2. (생략)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u>의무대</u> <u>상자동차</u>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

1 <u>저공해엔진 개</u>
조 <u>의무대상 자동차</u>
2
<u>의무대상 자동차</u> <u>배출가스</u>
<u> 저감장치</u>
제16조(저공해 조치 명령 등) 의무대상 자동차
<u>저공해 조치</u> <u>의무대상 자동차</u>
 1. <u>배출가스저감장치</u> 2. (현행과 같음)
제17조(저공해 조치 기간) ① <u>의무대</u> 상 자동차

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무대상 자동차가「대기환경보전법」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종합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장은 저공해조치 기간을 1년 (매연농도가 10% 이하인 차량은 차기검사기간)까지 유예(재유예)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u>의해</u> 유예 받은 <u>의무대</u> <u>상자동차</u> 소유자는 그 유예사유가 해제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u>저</u> 공해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시장은 <u>의무대상자동차</u>의 정비상태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의무대상자동차</u>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하고, <u>저공해조치</u>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u>저공</u> <u>해조치</u> 명령을 이행한 자동차 또는 <u>조기폐차</u>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

②
<u>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u>
<u> 공해 조치</u>
<u>저공해 조치</u> <u>10퍼센트</u>
 ③ <u>따라</u> <u>의무대</u>
<u> 상 자동차</u>
<u>저</u> 공해 조치
제18조(자동차 정비 및 저공해 조치 권고) ① <u>의무대상 자동차</u>
<u> 의무대상 자동차</u>
<u>저공해 조치</u>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재정적 지원) ① <u>저공</u>
해 조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
법」 제29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의

거나 융자할 수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5등급 자동차 중 조기폐차한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기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시장이 인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가스저 감장치 등을 부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할 수 있다.	제20조(그 밖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 ①